

임예진 관세법(2023년 대비) 개정사항 (5)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3. 2. 28. 개정 [시행 2023. 2. 28.]

* 공지사항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환급특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p.674 : 2. (6) ③ 신설, (7) 단서 신설

(6)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 또는 비적용승인 신청의 제한

상기 (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 ①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 ②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 ③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7) 적용승인 또는 비적용승인의 적용 시점

상기 (3) 단서 또는 (6)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기 (6)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p.695 : 3. (4) 수정

(4) 환급신청기간

상기 1.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 제1호의 경우는 수출신고 수리일, 법 제4조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한 경우는 당해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2년 | 5년 |

p.703 : 2. (4) 신설

(4) 징수 통지 등을 받은 경우의 자진신고 이율 **[영 제30조 제3항]**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 본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 ① 상기 1. (4)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② 「관세법」 제1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 ③ 「관세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